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제 안 설 명

이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0년 반민주시대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을 확정하여 그린벨트 주민들을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생존권을 묶어 왔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을 하여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와 단속으로 기본 생존권마저 박탈을 당하고 수십년을 지내왔지만, 정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린벨트의 부당성을 먼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지역 조사 및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피해
주민 특별보상을 국회에 청원 입법으로 제출하는 등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의회에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안하는 것
입니다.

구시대의 악법을 개정하여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여,
그린벨트 주민도 국민의 구성원으로 희망과 꿈을 가득 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